



용인시



수신 관내 의료기관

(경유)

제목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(결핵균) 검사결과 신고기한 준수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결핵은 제2급감염병으로 「결핵예방법」 제8조에 따라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사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, 신고의무자*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* 신고의무자: 의료기관의 장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그 밖의 신고의무자 등
3. 또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결핵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
가. 결핵환자등 발생 및 사망: 24시간 이내 신고

(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KCD) 코드 “A15-19”에 해당)

※ 「결핵환자등 신고·보고서」(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)

나. 병원체(제2급-결핵균) 검사결과: 24시간 이내 신고

※ 「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」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별지 제1호의5서식)

4.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(결핵균) 검사결과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(결핵균) 신고·보고 안내 1부. 끝.

용인시장



주무관

한승희

감염병대응팀장

홍혜진

보건행정과장

전결 2026. 9. 4.

김경애

협조자

시행 보건행정과-20356

(2026. 9. 4.)

접수

우 1683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, 수지구보건소 (풍덕천동) / www.yongin.go.kr

전화번호 031-6193-0787

팩스번호 031-6193-0779

/ jiny2068@korea.kr

/ 비공개(5)